

기 정

도시관리계획 (용도지역) 결정(변경)

용도지역 결정(변경)도

범례

-  대상지
-  일반상업지역
-  준공업지역
-  제1종일반주거지역
-  제2종일반주거지역

구분	작성자	입안 및 결정권자	
		1차 확인자	2차 확인자
소속	도시계획과	도시계획과	도시계획과
직위	주무관	주무관	도시계획팀장
직명	지방시설주사	지방시설주사	지방시설사무관
성명	박지원	박지원	박근자
확인인			

※ 변경부분에 한하여 유효함



